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0
----------	-----

2019.12.02.(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영은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1월 26일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임영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매 5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의 수

립과 시행(안 제4조)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실시(안 제6조)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초에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계획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

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집행 실적

2.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전문가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유통·판매·수출 관련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 4조의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업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항 제1호~3호
 -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 계획
- 안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항 제1호
 -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 추진 현황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역특화작목 실태조사비(추계기간: 2020~2024년/5년간)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시설투자비: 관련부처(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 예타 진행 중·연구개발비: 국비(100%), 연구기관 시설투자비: 도비 매칭(국 50 : 도 50%)

나. 추계 결과: 230백만원(국비) * 세입 및 세출예산 없음

다. 재원조달 방안: 중앙발전협회(법인)에서 지역발전협회(법인)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지역특화작목 실태조사	230	30	30	50	50	70